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자

◆ 본 기관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는 다음의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공통: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② 공통: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③ 주야간보호: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 ④ 방문요양: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 ⑤ 방문목욕: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 노인장기요양 급여내용

◆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요양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등
가사활동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 세탁 · 주변정돈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업무대행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기관은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 주간보호

구분		서비스 내용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취마·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일상동작 훈련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 훈련, 작업치료적 훈련, 언어치료적 훈련)등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기타서비스		이동서비스,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상세한 서비스의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주·야간보호)에 기재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③ 방문요양

서비스내용: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한다.

④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자의 자립적인 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⑤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노인복지 연계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 노인장기요양 급여계약

◆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당사자: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② 계약당사자와 시설간의 재가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목적

- ①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이용기간, 비용등의 항목에 있어 계약당사자인 시설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에 있다.
- ②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기간

- (1)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표준약관에 이를 기재하여 입소 계약을 체결하되,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 범위 안에서 계약기간을 정한다.
- (2) 이용기간의 연장: 급여제공계약서상의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한다,
- (3)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 월 이용료
 - (1) 월 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 (2)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20일 이상 이용할 경우(1일 8시간 이상) 월 120%한도액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 (3) 장기요양등급없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1) 8시간미만: 30,000원
 - 2)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30,000원
 - 3) 10시간이상: 40,000원
- ②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준용하여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에 따른 이용료로 산정한다.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3)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 ③ 그 밖의 비용부담액
 - (1) 비급여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비급여항목으로 비용을 정하되,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비용을 산정하도록 한다.
 - (2) 시설의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식재료비
 - 2) 간식비
 -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3) 비급여 항목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별표1]과 같으며,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혹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 또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또는 약제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에서 대납을 한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해당비용을 직접 청구하여 수납하도록 한다.(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5)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④ 시설의 월별 이용료는 후불제이며,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시설에서 월별로 청구한다.

⑤ 시설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용료의 상세 내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월별 이용료에 관한 설명문을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설명문에는 이용자의 건강상태, 심리상태등 이용자의 시설 이용 근황을 포함하여 제공하되 SNS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 2026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2026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추가한도 포함		3,015,480	2,797,440	1,833,840	1,691,640	1,450,680
본인 부담금	일반(15%)	376,935	349,680	229,230	211,455	181,335
	감경(9%)	226,161	209,808	137,538	126,873	108,801
	의료(7.5%)	188,468	174,840	114,615	105,728	90,668
	의료(6%)	150,774	139,872	91,692	84,582	72,534
	감경(6%)	150,774	139,872	91,692	84,582	72,534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0%를 부담한다.

■ 이용료의 납입 절차

- ① 시설에 대한 월별 이용료는 후불제로 산정한다.
- ② 시설에 대한 월별 이용료는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및 시설의 각 비급여항목의 비용에 따라 산정한다.
- ③ 월별 이용료는 시설이 전월 급여비용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의뢰한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에 따라 각각의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해당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안내하고 수납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월별 이용료를 안내받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시설 명의로 되어 있는 운영비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직접 송금한다.

■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권리

-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기관에 통보한다.
- (3) 입소 후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이용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기관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 (6) 혐오물품, 동물,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기관에서 소지할 수 없다.

② 의무

- (1)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동반출입금지 등 청결 의무
-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

■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 예방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5.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6. 노인학대 예방
7. 이용자의 인권보호

■ 배상책임

시설은 이용자의 생활에 대한 안전 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화재 등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① 배상책임보험은 당해 시설을 이용 중인 수급자 전원 또는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등 인력 전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기간이 유효하여야 한다.
- ② 화재보험에 가입하며, 가입기간이 유효하여야 한다.
- ③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의 증권 사본을 시설 내에 게시하여 이용자(보호자)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로써 상시 제공한다.

■ 면책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 (1) 시설 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주간보호)
 - (3) 시설의 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주간보호)
 - (4) 노인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1) 시설 내에서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 (2) 시설의 종사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3)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4)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③ 이용자의 이용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④ 이용자의 이용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⑤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⑥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⑦ 반기별 1회이상 개최하는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과정에서의 특이사항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⑨ 월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이용계약해지 · 전원 시에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⑩ 특별한 경우 시설의 협약 · 연계 병원 및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 인수인의 의무

-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납부에 관한 의무
-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⑥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2) 이용하고 있는 재가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3) 시설종사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
 - (4) 시설의 다른 이용자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

- (5)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시설에서 임의로 변경한 경우
- (6)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방문요양)

- (7)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중한 경우로 판정될 때
- (4)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의 자격을 상실한 때
-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 (6) 타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때
-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8) 이용계약시 제시된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9) 이용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재가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 (10)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했을 때
- (11) 월 이용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에서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미납사실을 알리고 보호자가 해당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체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다.

■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 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